

광주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2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218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92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우

피고, 항소인B

담당변호사 심재훈, 최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변론 종결2023. 11. 8.

판결 선고2023. 12. 20.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92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9.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12. 29. 접수 제245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2020. 9. 4. C로부터 3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을 당시 실질 채무액은 178,188,387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C의 배우자인 K이 D에게 1억 8,000여만 원을 변제하여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2) 판단 갑 제1,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각 적힌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배우자인 K과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처형인 D 등 처가 식구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는데, 2020. 9. 4. 미변제금액을 3억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당시 C의 실제 채무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피고의 주장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으로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D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C가 D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이후에 C가 D에게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원고에게 한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양영희

판사김진환

판사황진희

별지